

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제정 2006. 10. 17. 조례 제2024호
 일부개정 2016. 2. 18. 조례 제2711호(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)
 일부개정 2016. 11. 10. 조례 제2780호
 일부개정 2023. 5. 22. 조례 제3502호(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
 일부개정 2023. 7. 17. 조례 제352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양시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6. 11. 10.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1. 10., 2023. 5. 22., 2023. 7. 17.>

1. “장수노인”이란 「주민등록법」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장수수당”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
제3조(지급대상자) 장수수당 지급대상자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. <개정 2016. 11. 10., 2023. 7. 17.>

1. 삭제 <2023. 7. 17.>
2. 삭제 <2023. 7. 17.>

제4조(지급액 및 지급기준) ①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. <개정 2023. 5. 22., 2023. 7. 17.>

②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수수당은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.
2.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3.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6. 11. 10.]

제5조(수당의 신청 및 지급)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

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해당 거주지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개정 2016. 11. 10.>

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(위임장 소지)이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10.>

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 한 후 그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1. 10.>

④ 안양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15일에 장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1. 10.>

제6조(지급중지 및 환수조치)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급대상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수급자가 전출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된 때
2. 수급자가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
3.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
4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
제7조(대장 등 비치) 동장은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및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수수당 수급자 관리대장에 기록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1. 10.>

부칙

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2. 18. 조례 제2711호,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1. 10. 조례 제2780호>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5. 22. 조례 제3502호,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
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7. 17. 조례 제352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